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1가단1427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창

변론 종결2023. 1. 19.

판결 선고2023. 3. 16.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9.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10. 17. 접수 제944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404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피고의 아들인 B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본인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타인 명의를 빌려 'D', 'E', 'F', 'G', 'H'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2019. 10. 이전에 성립한 B의 국세채무에 대한 체납액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1. 25.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1,779,980원(가산세 포함)이다.

1	부가가치세	17년 2기	2017. 12. 31.	2019. 11. 15.	1,002,470	1,197,760
2	17년 2기	2017. 12. 31.	2021. 9. 9.	4,297,720	4,426,650	
3	17년 2기	2017. 12. 31.	2021. 9. 15.	5,734,990	5,907,030	
4	17년 2기	2017. 12. 31.	2021. 9. 15.	6,937,240	7,145,350	
5	17년 2기	2017. 12. 31.	2021. 9. 15.	5,656,580	5,826,270	
6	17년 2기	2017. 12. 31.	2021. 9. 15.	6,411,570	6,603,910	
7	18년 1기	2018. 6. 30.	2018. 9. 30.	3,499,540	4,580,660	
8	18년 1기	2018. 6. 30.	2019. 11. 15.	6,337,280	7,572,830	
9	18년 1기	2018. 6. 30.	2021. 9. 9.	28,626,160	29,484,940	
10	18년 1기	2018. 6. 30.	2021. 9. 15.	23,273,280	23,971,470	
11	18년 1기	2018. 6. 30.	2021. 9. 15.	25,516,370	26,281,860	
12	18년 1기	2018. 6. 30.	2021. 9. 15.	28,194,800	29,040,640	
13	18년 2기	2018. 12. 31.	2021. 9. 15.	4,811,000	4,955,330	
14	18년 2기	2018. 12. 31.	2021. 9. 15.	900,000	927,000	
15	19년 1기	2019. 6. 30.	2019. 9. 30.	24,174,020	28,798,980	
16	종합소득세	19년 2기	2019. 9. 30.	2019. 10. 25.	11,958,000	14,379,380
17	2018년	2018. 6. 30.	2018. 11. 30.	3,679,000	4,438,440	
18	2018년	2018. 12. 31.	2019. 8. 31.	2,228,220	2,712,810	
19	2019년	2019. 6. 30.	2019. 11. 30.	2,953,000	3,528,670	
합계	196,191,240	211,779,980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9. 10.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그로부터 1개월 정도 후인 2019. 11. 14. 피고에게 다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9. 11.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재산은 별지 재산내역과 같은바,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B의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경과

B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1 주식회사는 B에 대한 대출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0219) 법원은 2022. 10. 20.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고, 위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 1) 피보전채권 위 제1의 가.항에서 본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종중이 각 실질적 소유자였고,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었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형식적인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 또는 종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B의 재산상태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경위 내지 동기와 무상성, B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고,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뒷받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지영

별지